

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(강남인강)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

의안 번호	9-81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12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강남구와 인터넷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을 통해 온라인 교육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구축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, 관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,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함.
- 양질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·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.

법적근거
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8항
-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2조
- 「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」 제15조

협약개요

- 협약체결일 : 2025. 9월 중
- 협약기간 : 2025. 9월 ~ 2027. 9월(2년)
- 협약기관 : 안산시, 강남구

주요내용

- 인터넷수능방송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강남구와 안산시의 협력사항
 - (강남구) 안산시 인터넷수능방송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구성, 강의 콘텐츠 제공 등 기술 지원
 - (안산시) 강남구 기술지원을 통한 인터넷수능방송 구축 후 안산시 학생들에게 강남구의 강의콘텐츠 제공, 지속적인 홍보와 회원등록비 지원

-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- 비용추계서 : 【붙임 2】
- 협약서(안) : 【붙임 3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4】
- 협약(동의) 안건 점검표

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(강남인강) 공동이용 협약(안)

경기도 안산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터넷수능방송(강남인강)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경기도 안산시(이하 “안산시”) 인터넷수능방송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 조건)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강남구”)는 안산시 인터넷수능방송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구성, 강의 콘텐츠 제공 등 기술지원을 하고, 안산시는 필요시 홈페이지 도메인 개설, 이미지 구성 등 기술지원을 통한 인터넷수능방송을 구축한 후 안산시 학생들에게 강남구의 강의콘텐츠를 서비스한다.

제3조(협약기간 및 해지) ① 본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(2025. 0. 0. ~ 2027. 0. 0.)으로 하되,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협약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며, 협약해지 시에는 강남구에서 기술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② 안산시가 인터넷수능방송 개국 후 협약기간 동안 제4조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남구는 기술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4조(회원확보 및 운영) ① 안산시는 협약체결 이전에 관내 중·고교학생 수 30명(단체 수강권 구매 기준) 이상을 인터넷수능방송 정회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남구에 제시하고, 협약 체결 후 상기 회원확보 방안에 의한 지속적인 홍보와 회원등록비 지원 등을 통해 정회원을 확보한다.

② 안산시는 운영부서(담당자) 변경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의 사유로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강남구로 통보한다.

③ 안산시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을 위한 강의콘텐츠 제공 및 기술지원 비용은 강남구가 부담하고, 운영 중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별도 협의 후 결정한다.

제5조(수강권 등록기간) ① 협약기간 내에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하여 회원 가입비가 인상될 경우, 안산시는 강남구 조례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.

② 단체수강권의 등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, 그 기간 내에 회원들이 수강등록 할 수 있도록 안산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저작권) 강남구가 제공하는 모든 강의콘텐츠의 저작권은 강남구에 있다.

제7조(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) ①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 협약의 체결은 협약 당사자인 강남구와 안산시 외 제3자와는 체결하지 아니한다.

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협약대상 기관 업무 담당자에게만 관리자 ID와 IP주소 1개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.

③ 안산시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, 등록회원의 개인정보 등이 불법으로 변경 또는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그에 관한 책임은 해당 행위기관 또는 당사자가 진다.

제9조(기 타) ①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협의 후 결정하며,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한다.

② 본 협약서는 “안산시”와 “강남구”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월 일



경기도 안산시
시장 이 민 근



서울특별시 강남구
구청장 조성명